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해 양 경 찰 청 소 속 경 찰 공 무 원
교 육 훈 련 규 정 시 행 령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해양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사고 대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의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경찰법」(법률 제16515호, 2020.2.21. 공포·시행)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해양경찰 고유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 운영(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1) 교육원 교육훈련을 신입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2)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 및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의 인원을 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계획과 직장훈련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3)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장훈련 및 상시학습(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함

2) 연간 필요한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및 선택권을 제공함

다. 위탁교육훈련 및 수탁교육(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위탁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2) 1년 이상 국외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관련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할 수 있음

라. 해양경찰교육기관의 운영(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과 강사로 임용하고 교수요원 역량평가와 우수교원 선발을 통해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함

2) 해양경찰교육기관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학칙, 생활관 생활, 퇴교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해양경찰법 제19조제1항

2)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9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그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해양경찰교육원
 - 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 라. 해양경찰정비창
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파출소·항공단·특공대·종합상황실·해양경찰구조대·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상교통관제센터를 말한다.
4. “교육원 교육훈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6. “직장훈련”이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상시학습”이란 개인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상적·지속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8. “현장부서 훈련”이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인 숙달과정을 말한다.
9. “그 밖의 교육훈련”이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따르거나 경찰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말한다.
10.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실시의 의무)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과 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용제청권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원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직장훈련, 상시학습, 현장부서 훈련 및 그 밖의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제7조(현장부서 직무역량평가)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해당 보직을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역량평가의 결과를 경찰공무원 보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직무역량평가의 대상과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동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구성·임기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교육훈련과정 운영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간 내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5급(항해사, 기관사) 면허증을 갖고 있거나 취득해야 한다.

④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 임용된 후 2년 이내에 기본교육훈련을 받아

야 한다.

⑤ 제4항의 기본교육훈련 이수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총경(「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현장부서 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부서 훈련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부서 훈련의 방법과 시기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과정과 교육훈련기간 및 그 교육훈련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 및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인원의 배정을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 지침과 정책, 배정된 인원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기간 및 대상(인원)
3.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5.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과목
6. 교육훈련의 성적 평가방법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인원 배정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3조(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의 교육원 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찰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

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시설)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도록 소속기관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한다.

제3장 직장훈련 및 상시학습

제15조(직장훈련 운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상시학습제도 운영)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연간 필요한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상시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교육훈련인정유형 및 인정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및 수탁교육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3. 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위탁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명세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4. 휴직 중이 아닌 사람

제21조(위탁교육훈련 과제의 부여) 해양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대상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제22조(위탁교육훈련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23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로 본다.

제24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①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교육훈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25조(국외위탁교육훈련자 복무의무)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 3항에 따라 1년 이상 국외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복무의무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제26조(수탁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해양경찰교육기관 운영

제27조(교수요원 인력풀 구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② 교수요원 추천후보자의 모집, 서류심사, 교육·관리·양성 등에 관

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8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수, 교습, 강의 그 밖의 교육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한다.

1.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사격, 무도훈련, 구급, 구조, 소화방수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경찰교육원의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교수요원 역량평가) ① 교수요원의 역량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 역량평가의 결과를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교원 등 선발) ① 해양경찰청장은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1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보 제한기한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32조(교수요원의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 기술 등 전

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제33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연구 및 개선해야 한다.

제34조(학칙 등)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1. 입교, 퇴교, 졸업,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생활관 생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급식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생활관에 입실 중인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장에서는 “교육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퇴교처분)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입교명령을 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해양경찰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 그 밖의 교육훈련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를 해양경찰교육원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이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 등록금, 그 밖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임·기본·전문교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의 신임·기본·전문 교육은 이 규정 제9조의 교육원 교육훈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나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및 해양경찰교육원” 부분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같은 조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과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제2항·제3항

· 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504